



제 1223호

2015년 3월 9일 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8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규 칙 제8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

훈 령

- 조 례 제30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16
- 조 례 제30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31

공 고

- 공 고 제2015- 463호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41
- 공 고 제2015- 464호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42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3월 9일

남동구 규칙 제8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 표]

기관별 · 직급별정원(제2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비고 (행정복지)
총 계		948	598	20	70	11	249	(4)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945	595	20	70	11	249	(4)
	2급 소계	1	1					
	행 정	1	1					
	4급 소계	6	4	1	1			
	행 정	4	3	1				
	기 술	2	1		1			
	5급 소계	62	33	2	7	1	19	
	행 정	18	16	2				
	의 무	3			3			
	행정 · 사회 복지	6	4				2	
	행정 · 공업	4	2				2	
	행정 · 녹지	1					1	
	행정 · 해양 수산	1					1	
	행정 · 보건	3			1		2	
	행정 · 의료 기술	1					1	
	행정 · 간호	1					1	
	행정 · 환경	3	2				1	
	행정 · 시설	10	6			1	3	
	행정 · 공업 · 환경	2	1				1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1	1					
	행정 · 녹지 · 시설	5	1				4	
	행정 · 보건 · 간호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의 무	1			1			
	행정 · 보건 · 의무 · 간호	1			1			

6급 소계	235	167	8	17	2	41	
행 정	108	81	7		1	19	
세 무	6	6					
전 산	1	1					
사 회 복 지	4	4					
속 기	1		1				
공 업	3	3					
녹 지	1	1					
보 건	3			3			
환 경	3	3					
시 설	14	14					
방 송 통 신	1	1					
운 전	5	1		1		3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4	4					
행정 · 세무	9	7				2	
행정 · 전산	1	1					
행정 · 사회 복지	18	12				6	
행정 · 사서	1	1					
행정 · 공업	3	2				1	
행정 · 농업	1	1					
행정 · 녹지	4	1				3	
행정 · 해양 수산	2	1				1	
행정 · 보건	4			3		1	
행정 · 환경	4	3				1	
행정 · 시설	12	9				3	
행정 · 방송 통신	1	1					
행정 · 사무 운영	1					1	
공업 · 환경	1	1					
공업 · 시설	1	1					
녹지 · 시설	1	1					

보건·의료 기술	1			1			
보건·간호	5			5			
의료기술· 간호	1			1			
행정·사회 복지·시설	1	1					
행정·공업 ·환경	1	1					
행정·공업 ·시설	3	2			1		
행정·보건 ·간호	1			1			
행정·해양 수산·시설	1	1					
보건·의료 기술·간호	2			2			
7급 소계	330	205	7	24	4	90	4
행 정	128	69	3	1	1	54	(4)
세 무	27	27					
전 산	3	3					
사 회 복 지	36	12				24	
속 기	2		2				
공 업	6	6					
농 업	2	2					
녹 지	5	5					
해 양 수 산	1	1					
보 건	8			8			
의 료 기 술	6			6			
간 호	5			5			
환 경	9	9					
시 설	37	37					
방 송 통 신	3	3					
간 호 조 무	1			1			
운 전	17	7	1		1	8	
건 축 운 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 기 운 영	1	1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3	9	1			3	
행정·사회 복지	4	3				1	
행정·사서	2	2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1			2		
농업·수의	2	2					
녹지·시설	1	1					
보건·간호	3			3			
행정·사회 복지·시설	1	1					
8급 소계	265	149	2	16	3	95	
행 정	114	67	1			46	
세 무	10	9			1		
전 산	4	4					
사 회 복 지	48	15				33	
공 업	8	8					
농 업	1	1					
녹 지	5	4			1		
보 건	9	1		8			
의 료 기 술	3			3			
간 호	3			3			
환 경	5	4			1		
시 설	21	21					
방 송 통 신	2	2					
운 전	9			1		8	
기 계 운 영	2	1	1				
사 무 운 영	11	6				5	
행정·사회 복지	6	3				3	
행정·해양 수산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보건·간호	1			1			

9급 소계	45	35		5	1	4	
행 정	16	11			1	4	
세 무	5	5					
전 산	1	1					
사 회 복 지	7	7					
사 서	2	2					
농 업	1	1					
녹 지	3	3					
보 건	5			5			
시 설	3	3					
행정·사회 복지	1	1					
행정·방재 안전	1	1					
연구직 계	1	1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출결과에 따라 남동구의 정원 증원과 부서(기관) 신설이 예정됨에 따라, 부서(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일부개정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현황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증 감	33	△4	-	△2	11	28
현 행	915	602	20	72	-	221
개정(안)	948	598	20	70	11	249

- 직급별 조정현황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 연구사	
정 원 증 감	33	-	0	1	27	22	△17	-	-	-
현 행	915	1	7	61	208	308	282	45	1	2
개정(안)	948	1	7	62	235	330	265	45	1	2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3월 9일

남동구 규칙 제8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혁신전략추진단)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중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을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의 2 중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정복지과장,보육정책과장 및”을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며, 가정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보육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생활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며 농수산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청소과장,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건축과장, 도시관리과장,도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자동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실·단·과의 사무분장) 구 본청에 두는 실·단·과의 사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4장에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사무분장)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1]과 같다.

별표1, 별표2-1,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본청의사무분장표(제8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혁신전략 추진단	1.	혁신적일처리방식의개선
	2.	공약사항 이행검토 및 지원방안
	3.	지방재원 확보 지원
	4.	복지 업무 장기발전 방향 설정 및 업무 발굴
	5.	장기 미해결 민원 검토 및 해결방안 수립·운영
	6.	일거리창출과 먹거리 관련 사업 추진
	7.	기타 구청장 지시사항
건축과	1.	건축 행정의 종합 조정
	2.	건축 행정 건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신발생 위법건축물(무허가) 정비 등에 관한 사무(GB, 도로 및 인도 제외)
	5.	향측 적출 위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무(GB, 도로 및 인도 제외)
	6.	세외 수입(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사무
	7.	건축위원회설치및운영
	8.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 제한에 관한 사무
	9.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0.	건축허가·신고관련업무에관한사항
	11.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12.	공작물 축조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건축 시공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4.	통계(건축, 주택) 업무 등에 관한 사무
	15.	건축물대장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6.	건축물대장 표시 등에 관한 사무
	17.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에 관한 사항
	18.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업무에 관한 사무
	19.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업무
	20.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무
22.	건축물 분양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업무
25.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 현장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무
27.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28.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29.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30.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31.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32.	임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33.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운영
34.	미분양주택 관리 사무
35.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에 관한 사무
36.	주택관리업 관리에 관한 사무
37.	임대주택 관리업 관리에 관한 사무
38.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사무
39.	주거급여사업에관한사무
40.	주택바우처에 관한 사무
41.	주택 개량 지원 사업
42.	주택 매입(전세) 임대
4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44.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45.	집수리 개선 사업
46.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47.	공동주택관리주체외부회계감사
48.	공동주택 감리자 모집 및 승인 업무
49.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 업무

[별표 2-1]

사업소의사무분장표(제13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1.	남동구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사업
	2.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3.	외국인 근로자 생활체육 지원
	4.	각종 민원서류(민원24) 신청 및 발급
	5.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6.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접수처리
	7.	지방세(납세·독촉·체납)고지서발급
	8.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무
	9.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사무
	10.	악취배출시설 신고(변경) 사무
	1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사무
	12.	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 사무
	13.	도로, 인도, 하수관로(맨홀)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14.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
	15.	건축신고(착공 및 사용승인 포함)등에 관한 사항
	16.	위반건축물 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
	19.	가로수 유지관리
	20.	소 서무 및 회계업무
	21.	남동공단 재난관리(초기대응 및 동향보고) 업무
	22.	남동공단 청소 및 환경미화원 관리
	23.	공단 내 민원업무(건축,건설,환경,기타민원)

[별표 3]

동장의 직급(제14조관련)

동 별	현 행	개정(안)
구월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구월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구월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구월4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간석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간석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간석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간석4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만수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만수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만수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만수4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만수5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만수6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장수서창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촌도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논현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논현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논현고잔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 의거 남동구 본청 실·단·과 부서장의 직렬과 하부행정기관의 직렬을 폭넓게 조정하고 부서 및 사업소 신설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구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장 직렬조정(안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 (현행) 11개부서장 복수직렬 → (변경) 21개부서장 복수직렬
- 구 본청 및 사업소의 사무분장 신설 및 조정(안 별표1, 별표2-1)
 - 혁신전략추진단, 건축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 동장 직렬조정(안 별표3)
 - (현행) 6개동장 복수직렬 → (변경) 19개동장 복수직렬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3월 9일

남동구 훈령 제30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별”을 “실·단·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및 동별”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실·과 및 산하기관별 정원)”을 “(실·단·과 및 산하기관별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과별”을 “실·단·과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조제6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1에서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각 실·단·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현 행		개정(안)	
			정원	직 급 별 내 역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602		598	
기 획 예산실	일반직	계	18		17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5	행정5	4	행정4
		7급	7	행정7	7	행정7
		8급	5	행정4, 전산1	5	행정4, 전산1
혁신전략 추진단		계	0		12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사회복지1, 시설1
		7급			5	행정3, 사회복지1, 시설1
		8급			1	행정1
안 전 총괄실	일반직	계	18		17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5	행정2,전기운영1,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5	행정2, 공업1,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7급	8	행정1, 공업1, 시설2, 방송통신2, 전기운영1, 공업·시설1,	8	행정2,공업1,시설1,방송통신2, 전기운영1,공업·시설1,
		8급	3	행정1, 시설1, 기계운영1	2	시설1, 기계운영1
		9급	1	행정·방재안전1	1	행정·방재안전1
감사실	일반직	계	11		11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7	행정6, 행정·사회·시설1	7	행정6, 행정·사회·시설1
		7급	3	행정1, 시설1, 행정·사회·시설1	3	행정1, 시설1, 행정·사회·시설1
홍 보 미디어실	일반직	계	21		20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5	행정2, 전산1, 방송통신1, 행정·전산1,	5	행정2, 전산1, 방송통신1, 행정·전산1,
		7급	9	행정1, 전산3, 방송통신1, 전화상담운영1, 기계운영1, 사무운영2,	9	행정2,전산3,공업1,방송통신1, 전화상담운영1,사무운영1
		8급	6	행정1, 전산3, 방송통신2	5	전산3, 방송통신2
총무과	계		34		34	
	정무직	-	1	(구청장)1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31		31	

		2급	1	행정1	1	행정1
		4급	1	행정1	1	행정1
		5급	2	행정2	2	행정2
		6급	8	행정8	8	행정8
		7급	9	행정7, 사무운영2	10	행정7, 사무운영3
		8급	10	행정9, 사무운영 1	9	행정9
	별정직	소계	2		2	
		5급		-		-
		6급	1	비서요원(수행)	1	비서요원(수행)
		7급	1	비서요원(기사)	1	비서요원(기사)
재무과	일반직	계	29		27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7	행정3, 운전1, 기계운영1, 사무운영1, 행정·공업·시설1	7	행정2, 운전1, 기계운영1, 사무운영1, 행정·공업·시설2
		7급	12	행정3, 공업2, 시설1, 운전5, 사무운영1	13	행정4, 공업2, 시설1, 운전6
		8급	8	행정6, 시설1, 운전1	6	행정5, 공업1
		9급	1	운전1	0	
세무1과	일반직	계	27		27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4	세무3, 행정·세무1	5	세무3, 행정·세무2
		7급	13	행정1, 세무12	13	세무13
		8급	6	세무6	5	세무5
		9급	3	세무3	3	세무3
세무2과	일반직	계	27		27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6	행정1, 세무3, 행정·세무2	7	행정1, 세무3, 행정·세무3
		7급	13	세무13	13	세무13
		8급	4	세무4	4	세무4
		9급	3	세무3	2	세무2
문화체육과	일반직	계	24		24	
		5급	2	행정2	2	행정2
		6급	7	행정7	7	행정6, 시설1
		7급	7	행정6(임기제1), 시설1	8	행정6(임기제1), 시설1 독지·시설1
		8급	4	행정4	3	행정3,

		9급	4	행정4(임기제-무대장치, 조명, 음향기사, 화예사)	4	행정4(임기제-무대장치, 조명, 음향기사, 화예사)
민원 봉사과	일반직	계	20		19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5	행정5	4	행정4
		7급	4	행정3, 사무운영1	4	행정3, 사무운영1
		8급	9	행정9	9	행정9
	연구직		1	기록연구사1	1	기록연구사1
토지 정보과	일반직	계	21		20	
		5급	1	시설1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7급	10	행정2, 시설8	9	행정1, 시설8
		8급	6	행정1, 시설5	5	시설5
		9급	0		1	시설1
복지 정책과	일반직	계	21		22	
		4급	1	행정1	1	행정1
		5급	1	행정1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급	7	행정4, 행정·사회복지3	6	행정3, 행정·사회복지3
		8급	6	행정4, 행정·사회복지2	7	행정4, 행정·사회복지3
		9급	2	행정·사회복지2	3	행정2, 사회복지1
사회 보장과	일반직	계	28		28	
		5급	1	행정·사회복지1	1	행정·사회복지1
		6급	8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3	7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3
		7급	6	사회복지6	6	사회복지6
		8급	10	행정1, 사회복지9	10	행정2, 사회복지8
		9급	3	사회복지3	4	사회복지4
노인 장애인과	일반직	계	19		18	
		5급	1	행정1	1	행정·사회복지1
		6급	6	행정3, 행정·사회복지3	6	행정3, 행정·사회복지3
		7급	6	행정3, 사회복지3	5	행정2, 사회복지3
		8급	5	행정2, 사회복지3	5	행정2, 사회복지3
		9급	1	사회복지1	1	사회복지1
가정	일반직	계	14		14	

복지과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6	행정5, 행정·사회복지1	6	행정5,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3	3	행정3
		8급	3	사회복지1, 보건1, 행정·사회복지1	3	행정1, 사회복지1, 보건1
		9급	1	사회복지1	1	사회복지1
보 육 정책과	일반직	계	13		13	
		5급	1	행정1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4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급	4	행정1, 사회복지3	3	행정1, 사회복지2
		8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4	행정2, 사회복지2
		9급	2	행정·사회복지2	1	행정·사회복지1
평 생 교육과	일반직	계	14		13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사서1	4	행정3, 행정·사서1
		7급	4	행정2, 행정·사서2	4	행정2, 행정·사서2
		8급	2	행정2	1	행정1
		9급	3	행정1(임기제-사서), 사서2	3	행정1(임기제-사서), 사서2
일자리 정책과	일반직	계	14		14	
		4급	1	행정1	1	행정1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5	행정5(임기제1)	5	행정5(임기제1)
		7급	3	행정3	4	행정4
		8급	4	행정4	3	행정3
기 업 지원과	일반직	계	13		11	
		5급	1	행정1	1	행정·공업1
		6급	5	행정3, 공업1, 공업·환경1	5	행정3, 공업1, 공업·환경1
		7급	3	행정2, 공업1	2	행정1, 공업1
		8급	4	행정2, 공업1, 시설·공업1	3	행정1, 공업1, 공업·시설1
생 활 경제과	일반직	계	14		14	
		5급	1	행정·공업·환경1	1	행정·공업·환경1
		6급	5	행정3, 공업1, 행정·공업1	5	행정3, 공업1, 행정·공업1
		7급	3	행정3	3	행정3
		8급	5	행정1, 공업4	5	행정1, 공업4

농수산	일반직	계	14		15	
개발과		5급	1	행정 · 농업 · 해양수산1	1	행정 · 농업 · 해양수산1
		6급	3	행정 · 농업1, 행정 · 해양수산1, 행정 · 해양수산 · 시설1	3	행정 · 농업1, 행정 · 해양수산1, 행정 · 해양수산 · 시설1
		7급	8	행정1, 농업2, 해양수산1, 시설2, 농업 · 수의2	8	행정1, 농업2, 해양수산1, 시설2, 농업 · 수의2
		8급	2	농업1, 행정 · 해양수산1	2	농업1, 행정 · 해양수산1
		9급			1	농업1
청소과	일반직	계	18		17	
		5급	1	행정1	1	행정 · 환경1
		6급	5	행정3, 행정 · 환경2	5	행정4, 행정 · 환경1
		7급	5	행정2, 환경2, 사무운영1	5	행정2, 환경2, 사무운영1
		8급	6	행정4, 환경2	4	행정2, 환경2
		9급	1	행정1	2	행정2
환경 보전과	일반직	계	22		21	
		5급	1	행정 · 환경1	1	행정 · 환경1
		6급	7	행정1, 환경3, 사무운영1, 행정 · 환경1, 행정 · 공업 · 환경1	8	행정1, 환경3, 사무운영1, 행정 · 환경2, 행정 · 공업 · 환경1
		7급	8	환경7, 공업 · 환경1	8	환경7, 공업 · 환경1
		8급	6	행정1, 공업1, 환경3, 공업 · 환경1	4	행정1, 환경2, 공업 · 환경1
건설과	일반직	계	29		28	
		4급	1	기술1	1	기술1
		5급	1	시설1	1	행정 · 시설1
		6급	6	행정1, 시설4, 공업 · 시설1	6	행정1, 시설4, 공업 · 시설1
		7급	12	행정2, 공업1, 시설7, 운전1, 기계운영1	12	행정2, 공업1, 시설7, 운전1, 기계운영1
		8급	9	행정1, 공업2, 시설5, 사무운영1	8	공업2, 시설5, 사무운영1
건축과	일반직	계	22		23	
		5급	1	시설1	1	행정 · 시설1
		6급	4	행정1, 시설3	5	행정1, 시설3, 행정 · 시설1
		7급	10	행정1, 세무1, 시설7, 건축운영1	9	행정1, 시설7, 건축운영1
		8급	5	시설4, 사무운영1	6	사회복지1, 시설4, 사무운영1
		9급	2	시설2	2	시설2
도시 관리과	일반직	계	21		20	
		5급	1	행정 · 시설1	1	행정 · 시설1

		6급	5	행정1, 시설4	6	행정1, 시설3, 행정·시설2
		7급	6	행정1, 시설5	6	행정1, 시설5
		8급	7	행정1, 시설5, 사무운영1	7	행정1, 시설5, 사무운영1
		9급	2	시설2		
도 시 경관과	일반직	계	16		15	
		5급	1	행정·시설1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2, 사무운영1, 행정·시설3,	5	행정2, 사무운영1, 행정·시설2,
		7급	4	행정3, 사무운영1	3	행정2, 사무운영1
		8급	5	행정2, 시설1, 사무운영2	6	행정3, 시설1, 사무운영2
공 원 녹지과	일반직	계	19		18	
		5급	1	행정·녹지·시설1	1	행정·녹지·시설1
		6급	4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녹지·시설1	4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녹지·시설1
		7급	6	녹지6	5	녹지5
		8급	6	행정1, 녹지5	5	행정1, 녹지4
		9급	2	녹지2	3	녹지3
교 통 행정과	일반직	계	17		16	
		5급	1	행정1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2, 행정·시설2	4	행정2, 행정·시설2
		7급	6	행정2, 시설3, 사무운영1	6	행정2, 시설3, 사무운영1
		8급	5	행정4, 사무운영1	4	행정3, 사무운영1
		9급	1	전산1	1	전산1
자 동 차 관리과	일반직	계	24		23	
		5급	1	행정1	1	행정·공업1
		6급	7	행정3, 사무운영1, 행정·세무2 행정·공업1	7	행정3, 사무운영1, 행정·세무2 행정·공업1
		7급	5	행정3, 세무1, 사무운영1	5	행정3, 세무1, 사무운영1
		8급	9	행정9	8	행정8
		9급	2	행정2	2	행정2

【별표 2】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분	직 종	직급	현 행		개정(안)	
			정원	직 급 별 내 역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20		20	
	일반직	계	20		20	
		4급	1	행정1	1	행정1
		5급	2	행정2	2	행정2
		6급	8	행정7, 속기1	8	행정7, 속기1
		7급	6	행정3, 속기2, 운전1	7	행정3, 속기2, 운전1, 사무운영1
		8급	3	행정1, 기계운영1, 사무운영1	2	행정1, 기계운영1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조 정 전		조 정 후	
			정원	직 급 별 내 역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72		70	
보 건 행정과	일반직	계	27		25	
		4급	1	기술1	1	기술1
		5급	2	행정·보건·간호1, 의무1(개방형)	1	행정·보건·간호1,
		6급	5	보건1,운전1,보건·의료기술1, 보건·간호1,행정·보건·간호1	5	보건1,운전1,보건·의료기술1, 보건·간호1,행정·보건·간호1
		7급	11	보건2,의료기술5,간호2, 보건·간호2	12	보건2, 의료기술5, 간호2, 간호조무1, 보건·간호2
		8급	5	행정1,의료기술2,간호1, 간호조무1	4	의료기술2, 간호1, 운전1
		9급	3	보건2, 운전1	2	보건2
건 강 증진과	일반직	계	19		18	
		5급	4	의무3(개방형2),행정·보건·의료기 술·의무1,	3	의무2(개방형2), 행정·보건·의료기술·의무1
		6급	5	보건·간호3,의료기술·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5	보건·간호3,의료기술·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급	5	보건2, 간호3	6	보건2, 의료기술1, 간호3
		8급	4	보건1, 의료기술1, 간호2	3	보건1, 간호2
		9급	1	보건1	1	보건1
식 품 위생과	일반직	계	19		19	
		5급	1	행정·보건1	1	행정·보건1
		6급	5	보건3, 행정·보건2	5	보건2, 행정·보건3
		7급	5	행정1, 보건4	5	행정1, 보건4
		8급	7	보건7	7	보건7
		9급	1	보건1	1	보건1
간석보 건지소	일반직	계	7		8	
		5급	1	행정·보건·의무·간호1	2	행정·보건·의무·간호1, 의무1(개방형)
		6급	2	보건·간호1,보건·의료기술· 간호1	2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급	1	보건·간호1	1	보건·간호1
		8급	2	의료기술1, 보건·간호1	2	의료기술1, 보건·간호1
		9급	1	보건1	1	보건1

【별표 4】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분	직 종	직급	현 행		개정(안)	
			정원	직 급 별 내 역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11	
	일반직	계			11	
		5급			1	행정·시설1
		6급			2	행정1, 행정·공업·시설1
		7급			4	행정1, 운전1, 공업·시설2
		8급			3	세무1, 녹지1, 환경1
		9급			1	행정1

【별표 5】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현 행		개정(안)	
			정원	직 급 별 내 역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221		249	
구월1동	일반직	계	12		14	
		5급	1	행정·보건1	1	행정·보건1
		6급	1	행정1	2	행정1, 행정·세무1
		7급	6	행정2, 사회복지1, 운전1,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7	행정3(행정복지1), 사회복지1, 운전1,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4	행정2, 사회복지2
구월2동	일반직	계	13		14	
		5급	1	행정1	1	행정·시설1
		6급	2	행정1, 운전1	3	행정1, 운전1, 행정·시설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5	행정4, 행정·사회복지1	5	행정3,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구월3동	일반직	계	10		11	
		5급	1	행정1	1	행정·간호1
		6급	1	행정1	2	행정1, 행정·보건1
		7급	3	행정2, 운전1	4	행정3, 운전1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3	행정1, 사회복지2
		9급	1	행정1	1	행정1
구월4동	일반직	계	12		14	
		5급	1	행정1	1	행정·공업1
		6급	1	행정1·사회복지1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사무운영1	6	행정3(행정복지1), 사회복지2, 사무운영1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운전1	5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간석1동	일반직	계	11		12	
		5급	1	행정1	1	행정·녹지·시설1

		6급	1	행정1	2	행정1, 행정·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5	행정3, 사회복지1, 사무운영1
		8급	5	행정2, 사회복지1, 운전1, 사무운영1	4	행정2, 사회복지1, 운전1
간석2동	일반직	계	11		12	
		5급	1	행정1	1	행정·시설1
		6급	1	행정1	2	행정1, 행정·시설1
		7급	3	행정2, 운전1	3	행정2, 운전1
		8급	5	행정3, 사회복지2	5	행정3, 사회복지2
		9급	1	행정1	1	행정1
간석3동	일반직	계	13		15	
		5급	1	행정·환경1	1	행정·사회복지1
		6급	1	행정·사회복지1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운전1	6	행정2, 사회복지3, 운전1
		9급	1	행정1	1	행정1
간석4동	일반직	계	12		14	
		5급	1	행정1	1	행정·시설1
		6급	1	행정1	2	행정1, 행정·시설1
		7급	2	행정2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8	행정3, 사회복지3, 운전1, 사무운영1	7	행정2, 사회복지3, 운전1, 사무운영1
만수1동	일반직	계	12		14	
		5급	1	행정·사회복지1	1	행정·사회복지1
		6급	1	행정·사회복지1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6	행정3(행정복지1), 사회복지2, 운전1
		8급	5	행정3, 사회복지2	5	행정3, 사회복지2
만수2동	일반직	계	12		13	
		5급	1	행정1	1	행정·공업1

		6급	2	행정1, 운전1	3	행정1, 운전1, 행정·공업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6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 복지2
만수3동	일반직	계	10		11	
		5급	1	행정1	1	행정·환경1
		6급	1	행정1	2	행정1, 행정·환경1
		7급	4	행정2, 사회복지1, 운전1	4	행정2, 사회복지1, 운전1
		8급	4	행정1, 사회복지1,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4	행정2, 사회복지1, 사무운영1
만수4동	일반직	계	11		12	
		5급	1	행정1	1	행정·녹지1
		6급	1	행정1	2	행정1, 행정·녹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운전1	5	행정3, 사회복지1, 운전1
		9급	1	행정1	1	행정1
만수5동	일반직	계	11		12	
		5급	1	행정1	1	행정·보건1
		6급	1	행정1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5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4	행정2, 사회복지2
만수6동	일반직	계	12		13	
		5급	1	행정1	1	행정·녹지·시설1
		6급	2	행정1, 운전1	3	행정1, 운전1, 행정·사무운영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6	행정4, 사회복지2	5	행정3, 사회복지2
장 수 서창동	일반직	계	11		14	
		5급	1	행정·녹지·시설1	1	행정·녹지·시설1
		6급	1	행정·사회복지1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6	행정3,사회복지1,운전1, 사무운영1	6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사무운영1
남 촌 도림동	일반직	계	12		14	
		5급	1	행정 · 녹지 · 시설1	1	행정 · 녹지 · 시설1
		6급	1	행정1	2	행정1, 행정 · 녹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7	행정3, 사회복지3, 운전1
논현1동	일반직	계	12		13	
		5급	1	행정1	1	행정 · 해양수산1
		6급	1	행정1	2	행정1, 행정 · 해양수산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운전1	4	행정3, 사회복지1
논현2동	일반직	계	12		14	
		5급	1	행정1	1	행정 · 의료기술1
		6급	1	행정 · 사회복지1	2	행정1, 행정 · 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5	행정4(행정복지1),사회복지1
		8급	5	행정3, 사회복지2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9급	1	운전1		
논 현 고잔동	일반직	계	12		13	
		5급	1	행정 · 공업 · 환경1	1	행정 · 공업 · 환경1
		6급	1	행정1	2	행정1, 행정 · 세무1
		7급	4	행정2, 사회복지1, 운전1	5	행정3, 사회복지1, 운전1
		8급	6	행정4,사회복지1,사무운영1	5	행정3,사회복지1,사무운영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15년 부서(기관) 및 하부기관별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설부서(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정원 배치 (안 별표1, 별표4)
 - 2개부서(기관) 22명 : 혁신전략추진단(11명), 남동공단지원사업소(11명)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주민 센터 팀 증설 및 인력 총원 (안 별표5)
 - 19개 동 19팀 28명
- 신설부서(기관) 설치 및 동 기능 보강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인력 감원 (안 별표1, 별표3)
 - 20개 부서 △23명
- 기관별 인력 조정현황

(단위 : 명)

구 분 \ 기관별	개 편 전						개 편 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15	602	20	72	-	221	948	598	20	70	11	249
일반직	912	599	20	72	-	221	945	595	20	70	11	249
정무·별정	3	3	-	-	-	-	3	3	-	-	-	-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3월 9일

남동구 훈령 제30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하고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 활성화 대책)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구청장은 남동구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창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인천광역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 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국민권익위원회
2. 구청장
3. 수사기관
4. 그 밖에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②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우편·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익신고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이나 우편 등 서면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기록 및 관리)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자의 공익신고의 의무)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 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
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 등)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또는 공익신고 활성화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협조 등의 요청) 공익신고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접수기관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접수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 익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일	보상금 안내일자	담당자	비고
			송부일자	결과통보일			
201x - 00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동참할 것을 권고함(2012년).
- 인천광역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인천광역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2013.12.2일 훈령 제1130호).

□ 주요내용

- 공익신고 목적 및 정의 등 개념설명(안 제1조, 안 제2조)
 - 목적, 정의(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 공익신고 등, 공익신고자 등) 등
- 구청장의 책무 및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3조, 안 제5조)
 - 구청장의 책무, 공익신고센터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공익신고의 접수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안 제7조, 안 제10조)
 - 방문, 우편 등 공익신고의 접수 방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 공직자 공익신고 의무 및 보상금 지급 안내(안 제11조, 안 제13조)
 -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알게된 때 신고 의무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463호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운영)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되는 주민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5. 3. 11(수) ~ 4. 24(금), 45일간

2. 신고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3. 참고사항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2015년 3월 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5-464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5. 3. 9.
- 제공받은 자 : 아진전산(주)
- 제공목적 : 자동차세 3월 수시분 및 독촉장(2015년 1월분) 인쇄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세 납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대상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5. 3. 9. ~ 2015. 3. 24. (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5년 3월 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